

---

#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신청안내자료

---

# 1. 개요

## □ 사업목적

- 민간 투자자가 先 투자·펀딩 시 정책 자금을 최대 5배까지 매칭 용자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골목 벤처기업으로 육성

## □ 신청대상

-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용자 주관기관으로부터 투자금을 지원받고 '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'를 발급받은 소상공인

## □ 자금용도

- (운전자금)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- (시설자금) 기계·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, 사업장 건축 및 확보(매입, 경·공매)\* 등에 소요되는 자금

\* 토지만을 매입하는 경우 지원 불가

## □ 용자조건

-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분기별 변동금리) + 0.4%p
- (우대금리) 정책우대, 정책배려,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, 유형별 0.1%p로 최대 0.3%p 금리우대 지원\*

\*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

<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>

|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구 분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정책 우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소진공*·민간은행** 컨설팅을 받은 업체, 직접대출 성실상환, 제로페이 가맹점 |
| 정책 배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우수기업              |
| 사회안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자영업자 고용보험, 전통시장 화재공제, 풍수해보험, 노란우산 공제        |
| *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|   |
| ** 민간은행 컨설팅은 차후 진행예정              |   |

- (대출기간) 8년 (거치기간은 3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선택 가능)

| 선택가능 거치기간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■ 비거치     | ■ 1년(12개월) | ■ 2년(24개월) | ■ 3년(36개월) |

- (대출한도) 동일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

\* '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' 상 추천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

※ 대출한도 운영방법

- 동일인 당 최대한도 :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 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
- 1백만원 단위로,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
- 대리대출 지원잔액 포함 한도로 운영

- (상환방식) 거치기간 종료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

□ 신청, 접수

-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<https://ols.semas.or.kr>)를 통해 온라인 접수

| 구분   | 자금용도 | 신청·접수 방법 | 약정 방법 |
|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|
| 개인기업 | 운전자금 | 온라인 신청   | 전자약정  |
|      | 시설자금 |          | 대면약정  |
| 법인기업 | 운전자금 |          |       |
|      | 시설자금 |          |  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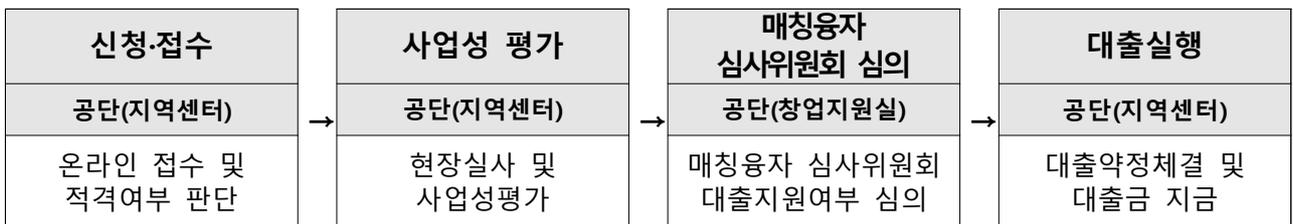
- 동일 접수기간(회차)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·접수 불가

□ 용자방식

- 지역센터 1차 심사 후 심사완료건 대상으로 매칭용자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통해 용자대상을 결정한 후 최종금액 승인

\*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매칭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대출 부결 시, 대출 불가

<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용자 용자절차 >



## 2. 지원대상

□ 소상공인\*으로 다음 사항(가~라)을 모두 만족해야 함

\* 『소상공인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
### 가. 상시 근로자 수

- 주된 사업\*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“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”에 해당할 것

\* 주된 사업이란?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,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

#### ※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

- 제조업, 건설업, 운송업, 광업은 10인 미만
- 이외 업종은 5인 미만

#### ※ 상시근로자 (법적)기준 (『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』 제3조제3항)

- ‘근로기준법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
  1. 임원\* 및 ‘소득세법 시행령’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
    - \* 법인의 대표이사,登記임원 및 감사(사외이사 제외), 개인기업 대표, 무급 가족 종사자 등
  2.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
  3.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\*의 연구전담요원
    - \* ‘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’ 제14조의1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
  4. 단시간근로자\*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(所定)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
    - \* ‘근로기준법’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

▶ 상시 근로자 수 확인방법은 “[붙임1] 소상공인 확인 기준” 참고

### 나. 평균매출액

-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 [붙임2]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

▶ 평균매출액등 확인방법은 “[붙임1] 소상공인 확인 기준” 참고

## 다. 사업구분

-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

\* 비영리 사업자(개인, 법인, 조합, 법인격 없는 조합 등)가 아닐 것

## 라. 업종

-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\*이 아닐 것

- ▶ “[붙임3] 업종구분 방법”, “[붙임4]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” 참조
- ▶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,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

### ※ 신청가능 자격

- 개인기업은 **실제경영자\***를 주채무자로 운용  
(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외 실제경영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**실제 경영자를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로 등재한 후 주채무자로 운용**)

\* “실제경영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기업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 또는 간부사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자
2. 직위(사장, 전무, 상무 등), 명칭, 출자지분을 등에 불구하고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

### 3. 대출제한대상

- 대출신청기업(개인기업 대표자, 법인, 조합), 개인기업의 공동대표자, 법인의(공동, 각자)대표이사, 조합 이사장, 실제경영자 및 보증인(법인)에 대하여 대출신청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
- ※ 대출신청 접수 및 심사·약정 과정에서 대출제한사항이 확인되는 경우, 신청접수 또는 대출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| 구 분   | 내 용  |   |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
|---|--|---|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|
| 1. 세금체납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</li> <li>- 징수유예(납부고지의유예, 납부기한등연장)의 경우, 대출신청 가능</li> <li>- 체납처분유예(압류매각유예)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, 대출신청 가능</li> </ul>  |   |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
| 2. 신용정보등록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국신용정보원의 “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 따라 “신용도판단정보”, “공공정보”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내 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신용도판단정보</td> <td>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 등</td> </tr> <tr> <td>공공정보</td> <td>세금·과태료 체납, 채무불이행자 등재, 신용회복지원, 회생, 개인회생, 파산면책 결정, 산재·고용보험료·임금 체납,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, 새출발기금(채무조정) 등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 | 구 분   | 내 용 | 신용도판단정보 |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 등 | 공공정보 | 세금·과태료 체납, 채무불이행자 등재, 신용회복지원, 회생, 개인회생, 파산면책 결정, 산재·고용보험료·임금 체납,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, 새출발기금(채무조정) 등 |
| 구 분   | 내 용  |   |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
| 신용도판단정보   |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 등  |   |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
| 공공정보  | 세금·과태료 체납, 채무불이행자 등재, 신용회복지원, 회생, 개인회생, 파산면책 결정, 산재·고용보험료·임금 체납,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, 새출발기금(채무조정) 등  |   |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
| 3. 연체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다음 ①~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li> <li>① 현재 연체 중</li> <li>②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</li> <li>③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</li> </ul>   |   |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
| 4. 자가(임차)사업장, 자가주택 권리침해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가(임차)사업장·자가주택*에 대한 권리침해사실**이 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해제시점(등기접수일자 기준)이 3개월 이내인 경우</li> </ul> <p>*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 기준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body> <tr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가사업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주된 사업장을 대표자(대표이사), 대표자(대표이사)의 배우자, 대출신청 법인, 실제경영자,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</li> </ul> </li> <li>- 자가주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대표자(대표이사), 실제경영자의 거주주택을 대표자(대표이사), 대표자(대표이사)의 배우자, 대출신청 법인, 실제경영자,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</li> </ul> </li> </ul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가사업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주된 사업장을 대표자(대표이사), 대표자(대표이사)의 배우자, 대출신청 법인, 실제경영자,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</li> </ul> </li> <li>- 자가주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대표자(대표이사), 실제경영자의 거주주택을 대표자(대표이사), 대표자(대표이사)의 배우자, 대출신청 법인, 실제경영자,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</li> </ul> </li> </ul> |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가사업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주된 사업장을 대표자(대표이사), 대표자(대표이사)의 배우자, 대출신청 법인, 실제경영자,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</li> </ul> </li> <li>- 자가주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대표자(대표이사), 실제경영자의 거주주택을 대표자(대표이사), 대표자(대표이사)의 배우자, 대출신청 법인, 실제경영자,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</li> </ul> </li> </ul> |  |   |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내 용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<b>** 권리침해사실 기준</b>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경매(공매)신청, 압류, 가압류, 가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</li> <li>- 임차사업장에 경매(공매)신청 기입등기가 있는 경우(임차주택 제외)</li> <li>- 단, 권리침해가 해제 또는 해지되었거나, 권리침해가 있더라도 사업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①~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대상에 포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해제 사유가 발생(해제된 경우 포함)되고, 권리침해 사유가 사업상 또는 기업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전결권자가 인정하는 경우</li> <li>② 권리침해 사실이 행정기관의 업무착오로 발생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등</li> </ul> </li> </ul> </div>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<b>5. 휴·폐업</b></p>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청업체가 휴·폐업 중인 경우</li> <li>*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</li> </ul>   |
| <p><b>6.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</b>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연도가 바뀌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 신청 불가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직접대출 심사·평가결과 대출결정에서 거절(부결)된 경우<br/>→ <b>대출부결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</b></li> <li>2. 직접대출 승인 통보된 대출결정자금을 전액 포기 (실효)하는 경우*<br/>→ <b>대출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</b></li> </ol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* 시설자금 승인 후 포기의 경우, 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</p> <li>3. 동일한 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<br/>→ <b>대출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*</b></li> </li></ul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* 단, 투자재원 다양화 등으로 복수의 추천을 받은 경우, 추천 건별 대출신청이 가능하고, 위 동일자금 6개월 재신청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</p> |
| <p><b>7. 한계기업</b></p>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50%이상 감소한 기업</li> <li>2. 당기(직전회계연도)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</li> <li>3. 최근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(영업이익/이자비용) 1.0미만인 기업</li> </ol> </li> <li>- 예외사항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</li> <li>• 제2호 및 제3호는 복식부기작성대상 기업에만 적용</li> <li>• 제3호의 이자보상배율 적용시 정부보조금, 판매장려금 등을 지원받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기업은 정부보</li> </ul> </li> </ul>   |

| 구 분  | 내 용   |
|--|---|
|  | 조금, 판매장려금을 영업이익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 |
| 8. 부채비율<br>700% 초과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% 초과 업체 (자기자본 전액잠식업체 포함)</li> <li>- 예외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</li> <li>• 부채비율 700% 초과이지만 제9호의 매출액 대비 초과 차입금 비율이 100% 이하이고, 전년대비 최근매출액(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)이 증가한 업체는 지원 가능</li> </ul> </li> </ul> |
| 9. 매출액 초과<br>차입금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총 차입금(가계자금대출 제외)이 당기 표준재무제표(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,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) 상 매출액(당기매출액* 또는 최근1년매출액기준) 대비 100% 초과하는 기업</li> <li>* 단,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적용 제외</li> </ul>  |
| 10. 공단에서<br>대출제한대상으로<br>관리 중인<br>다음 각호의<br>어느 하나에<br>해당하는 기업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단에서 성공불용자 '고의실패'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(대표이사)가 운영하는 기업(법인 포함)은 판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</li> <li>2.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*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(대표이사)가 운영하는 기업(법인 포함)</li> </ol>   |
| 11. (법인기업)<br>실제경영자<br>부적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법인대출) 실제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공동)대표이사, 무한책임사원</li> <li>2. 최대주주</li> </ol> </li> </ul>  |
| 12. (법인기업)<br>책임경영심사<br>관련 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결격요건에 한 항목이라도 저축 또는 평가등급이 미흡한 경우</li> </ul>  |
| 13. 사회적 물의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</li> </ul>  |
| 14. 허위 또는 부정<br>신청, 목적 외<br>자금사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,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</li> </ul>  |

## 4. 제출서류

### 1 대출신청 자료

#### ① 공통자료

| 분류                      | 서류명 및 검토사항   | 비고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|
| 대출신청<br>작성서류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출신청서</li> <li>-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</li> <li>- 기업(신용) 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·활용 동의서</li> <li>- [필수] 개인(신용) 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·활용 동의서</li> <li>- [선택] 개인(신용) 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·활용 동의서</li> <li>- 소상공인 정책자금(융자) 윤리준수 약속</li> </ul>   | 각1부                |
| ①<br>대표자<br>실명확인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, 여권</li> </ul> <p>* 여권은 여타 실명확인증표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<br/>*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</p>   | 택1                 |
| ②<br>사업자등록<br>및<br>업종확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자등록증 사본</li> <li>- 사업자등록증명 (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)</li> </ul>   | 택1부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</li> <li>1) (원칙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</li> </ul> </li> <li>2)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</li> </ul> </li> </ul> <p>• 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(직인필) 확인서류<br/>•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</p> | 1부                 |
| ③<br>상시<br>근로자수<br>확인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상시근로자 없는 경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(유효기간 이내)</li> </ul> </li> <li>- (상시근로자 있는 경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건강보험(월별)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(내역),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,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,산재), 소상공인확인서(유효기간 이내)</li> </ul> </li> </ul>   | 택1부<br>(1개월<br>이내) |

| 분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서류명 및 검토사항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상시근로자수 확인은 '건강보험'가입현황을 기본으로 하며, 제출이 어려운 경우 4대보험 중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</li> <li>2.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, 상시근로자수는 대출신청서에 기입</li> <li>3.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: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</li> </ol>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④</b><br><b>세금납부 증빙</b>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국세)납세증명서</li> <li>- 지방세납세증명서</li> </ul>  | 각1부<br>(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) |
| <b>⑤</b><br><b>주소확인</b>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민등록표등본 (외국인 :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국내거소사실증명)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"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주민등록번호 표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채무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</li> </ul> </li> <li>2. 과거 주소변동(이력)사항 표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현주소 전입일자가 최근 3개월 이전인 경우 주소변동(이력)사항 표시를 생략 할 수 있음</li> </ul> </li> </ol> </div>  | 1부<br>(1개월 이내)        |
| <b>⑥</b><br><b>주된 사업장 · 거주주택 확인</b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     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"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업장은 임차 및 자가 여부와 무관하게 제출</li> <li>2. 법인의 본점과 주사업장의 주소가 다른 경우, 본점 및 주사업장 모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</li> <li>3. "제출(발급)용"만 인정</li> <li>4.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장 주소지 변경시, 변경 전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제출</li> <li>5.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</li> <li>6.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, 무허가(가건물 등)인 경우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제출</li> </ol> </div> </li> <li>- 거주주택(주민등록주소지)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     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"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거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제출한 경우, 제출 생략</li> <li>3~6. 상동</li> </ol> </div> </li> </ul>   | 각1부<br>(1개월 이내)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(해당 시 1부)          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"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제출</li> <li>2. 전대차 임차사업장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(임대인 동의사실 기입 및 서명 또는 날인) 또는 별도 임대인 전대차동의서 징구</li> <li>3.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</li> </o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<br/>→ 사업장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</li> </ul> </div> </li> <li>- 거주주택(주민등록주소지) 임대차 계약서 사본 (해당 시 1부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임차인이 개인기업 대표, 법인기업(조합), 연대보증법인 인 경우만 수집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"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거주주택의 임차인이 채무자인 경우 제출</li> <li>2.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</li> </ol> </div> </li> </ul> | 해당 시<br>1부            |

| 분류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서류명 및 검토사항   | 비고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|
| ⑦<br>매출액<br>등<br>재무상황<br>확인 | - 기본서류 (최근 3년간)<br>• 표준재무제표증명 (개인사업자(복식부기대상자), 법인사업자)<br>•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(개인면세사업자)<br>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(개인과세사업자(간편장부대상자)) | 택1<br>(1개월<br>이내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보충서류 (최근 1년간)<br>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(개인과세사업자, 법인면세사업자)<br>•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(개인면세사업자)<br>•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(법인면세사업자)             | 택1<br>(1개월<br>이내) |

※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거래확인서, 대출원리금납입내역확인서 등을 수집할 수 있음.

## ② 추가 자료

| 분류                | 서류명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<br>법인기업<br>대출   | - 법인인감증명서 (1개월 이내)<br>-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(1개월 이내)<br>- 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<br>- 고용·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또는 사업자4대보험완납증명서   | 각1부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<br>법인기업<br>연대보증 | -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(1개월 이내)<br>- 법인인감증명서 (1개월 이내)<br>- 법인주주명부 사본<br>- 법인이사회입보결의서  | 각1부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③<br>우대금리         | <정책우대 유형 증빙><br>• (소진공 컨설팅)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, 컨설팅 협약서(3년 이내)<br><정책배려 유형 증빙><br>• (여성기업) 유효기간 내 여성기업확인서 사본<br>• (장애인기업) 유효기간 내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<br><정책배려 유형 증빙><br>• (자영업자 고용보험)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<br>• (전통시장 화재공제)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(공제기간 내)<br>• (풍수해보험)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<br>• (노란우산공제)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등 | 해당 시<br>각1부<br>(1개월<br>이내) |

|  |  |  |
|--|--|--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④</b><br/>기타<br/>(한도우대 및<br/>가점부여 등)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수출실적 증빙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직접수출) 수출실적증명원 (한국무역통계진흥원, 무역협회)</li> <li>• (간접수출) 수출실적증명원 (발행은행, KTNET)</li> <li>•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서</li> </ul> </li> <li>- (고용증가 증빙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최근 1개월 이내(대출신청 전월말)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</li> </ul> </li> <li>- (지식재산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산업재산권(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), 저작권의 등록원부 등</li> </ul> </li> <li>- (ESG 관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우수기업 확인서류, 녹색제품(환경표지제품, 우수재활용(GR)제품, 저탄소인증제품) 또는 환경성적표지제품 인증서 사본</li> </ul> </li> </ul>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해당 시<br/>각1부<br/>(1개월<br/>이내)</p>                     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⑤</b><br/>시설자금</p>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설투자계획서 &lt; 서식4 &gt;</li> <li>- (기계설비) 견적서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등</li> <li>- (부동산) 매매계약서 사본 및 계약금 영수증</li> </ul> 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해당시<br/>각1부</p> |

**2 현장평가 자료**

| 분류    | 서류명   | 비고  |
|-------|---|---|
| 기타 증빙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상실적</li> <li>- 자격증 등</li> </ul>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해당 시<br/>각1부</p> |

## 소상공인 확인 기준

### □ 소상공인 확인 개요

- 소상공인이란, 소기업<sup>①</sup> 중 소상공인<sup>②</sup>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<sup>③</sup>를 의미함
- 따라서,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(매출액) 확인 후, 소상공인(상시근로자 수)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

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- ① (소기업)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
- ② (소상공인)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
- ③ (영리기업) '중소기업기본법'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(법인, 개인사업자)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

\*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(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)

### □ 소기업 확인방법

-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

\* 참고 : <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>

- '매출액'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. 다만,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
-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(손익계산서)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·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

- (주된 업종)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

\* 참고 : <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>

- (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)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

| 구 분       | 매출액 확인 서류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간 이 과 세 자 | 사업자등록증(명)상의 과세유형(간이과세자) 확인   |
| 일 반 과 세 자 |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   |
| 면세사업자(개인) |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|
| 면세사업자(법인) | 표준재무제표증명                     |

**<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>**

| 사업기간  | 산출방법  |
|---|---|
|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             |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 |
|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~36개월 미만인 경우 |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·합병·분할한 경우          |   |
| 가. 창업·합병·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                 |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나. 창업·합병·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    | 창업·합병·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|
| 다. 산정일이 창업·합병·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        | 창업일·합병일·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□ **소상공인 확인방법**

- (상시근로자수)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

① **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**

| 업종             | 기준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 |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|
| 그 밖의 업종        |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|

\*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**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**

참고 : <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「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>

참고 : <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 및 제7조>

② **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**

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

| 사업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산정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          |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|  |
| 창업·합병·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| 창업·합병·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                   |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창업·합병·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(아래의 경우 제외)        |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산정일이 창업·합병·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                  |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  |

## ㉔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

### <「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3항>

- ① 임원\* 및 '소득세법 시행령'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
  - \* 법인의 대표이사, 등기임원(감사 포함), 개인기업 대표
-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
  - \* 근로계약서 등 확인
-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\*의 연구전담요원
  - \* '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
  - \*\*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.오프라인 발행)와 연구개발 인력현황(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) 제출받아 확인
- ④ 단시간근로자\*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(所定)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
  - \* '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
  - \*\* 근로계약서 등 확인

## □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

-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,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
-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①~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.
  - ①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
  - ② 소상공인이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
  - ③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
  - ④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
  - ⑤ 소상공인이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·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

[붙임2]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

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.10.17)

|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분류기호       | 규모 기준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1. 식료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C10        | 평균매출액등<br>120억원 이하 |
| 2. 음료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C11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| C14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| C15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| C19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     | C20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| C21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| C23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9. 1차 금속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| C24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    | C25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   | C26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2. 전기장비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| C28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              | C29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| C30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5. 가구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C32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          | D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7. 수도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E36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8. 농업, 임업 및 어업                       | A          | 평균매출액등<br>80억원 이하  |
| 19. 광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B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20. 담배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C12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            | C13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      | C16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| C17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                  | C18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| C22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          | C27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| C31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| C33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29. 건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          | 평균매출액등<br>50억원 이하  |
| 30. 운수 및 창고업                          | H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31. 금융 및 보험업                          | K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32. 도매 및 소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| G          | 평균매출액등<br>30억원 이하  |
| 33. 정보통신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J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 | E (E36 제외) | 평균매출액등<br>10억원 이하  |
| 35. 부동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L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| M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         | N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           | R          | 평균매출액등<br>10억원 이하  |
| 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                | C34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40. 숙박 및 음식점업                         | I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41. 교육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P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| Q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           | S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
-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-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

## 업종구분 방법

### □ 업종분류 기준

-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**한국표준산업분류**의 분류원칙에 따르며, 세세분류(산업분류 5자리)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.
  - \* (예) 사업자등록증의 종목(아이템)으로 구분 : (25294) 주형및금형제조업
- **(사업자등록 업종)** 사업자등록증(명)에 표시된 업종(업태)을 원칙으로 함
- **(실제로 영위하는 업종)** 현장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증(명)과 다를 경우,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.
  - \* 해당 업종이 사업자등록증(명)의 업종(업태)에 없는 경우, 업종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(명)을 제출
- **(주된 업종)**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, 주된 사업(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)을 기준으로 함

#### ※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

- ❶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
  - \*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(국고보조금, 개발보조금 등)은 제외하고 산정
  - (예) 제품매출 > 상품매출 → 제조업으로 분류
  - 제품매출 < 상품매출 → 도소매업으로 분류
- ❷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,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(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(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) 확인)의 매출액(수입금액)을 기준으로 함
  - 부가가치세신고서 : 일반, 간이과세자 -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
  - 사업장현황신고서 : 면세사업자 - 수입금액(매출액) 명세 업태 확인
- ❸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

##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 업종

| 표준산업분류         | 업 종   |
|----------------|---|
| 33409 중       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|
| 46102 중        | 담배 중개업  |
| 46209 중        | 잎담배 도매업   |
| 46333          | 담배 도매업<br>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  |
| 46463 중       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|
| 47640 중       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|
| 47811 중        | 약국, 한약국   |
| 47859 중        | 성인용품 판매점  |
| 47911, 47912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 |
| 47993 중        | 다단계 방문판매<br>다만, 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  |
| 52991 중        | 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   |
| 56211          | 일반유흥주점업   |
| 56212          | 무도유흥주점업   |
| 5821 중         | 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   |
| 63999 중        |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 |
| 64             | 금융업   |
| 65             | 보험 및 연금업  |
| 66             |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|
| 68             | 부동산업<br>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<br>- 부동산관리업(6821)<br>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<br>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|
| 76390 중       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|
| 711, 712       | 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 |
| 731            | 수익업   |
| 73904 중        | 감정평가업   |
| 75330 중        | 흥신소   |

| 표준산업분류  | 업종   |
|---------|--|
| 75993   |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|
| 75999 중 |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|
| 86      | 보건업<br>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  |
| 91113   |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|
| 91121   | 골프장 운영업  |
| 9122 중  | 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  |
| 91249   |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|
| 91291   | 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  |
| 9612 중  |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<br>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<br>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<br>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|
| 96992   |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   |
| 96999 중 | 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  |
| 기타      |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                   |